

「평창군 수리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5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2년 11월 25일 회부
- 상정일자: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2년 11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건설과장)

가. 제안이유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지역에 대하여는 운영비 전액이 지원되는데 반해, 우리 군이 관리하는 지역에는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에 의한 수리계 지원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수리계를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농어촌정비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 공사관리지역 밖의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군 수리계 조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수리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부.

평창군 수리계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리계”라 함은 한국농어촌공사관리지역 밖에 있는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구성된 조직 또는 군에서 지정한 조직을 말한다.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평창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등록)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1.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③ 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계 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계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

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 구역
4.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 집행 등에 관한 사항
7.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바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리계의 구성) ① 수리계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수리계에는 계의 장 1인과 간사 2인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계의장은 수리계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되, 임원의 선출방법,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7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부과) ① 수리계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리계원에게 비용을 부과하거나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전기료, 유류대 :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비용 전액
2. 장비임차료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사용한 장비임차료의 일부 및 전부
3. 시설복구비 : 노후시설 응급복구, 재해 응급복구를 위하여 사용한 복구비용 전액
4. 장비보수비 : 수리시설 사용 중 긴급한 장비보수를 위하여 사용한 장비보수비용 전액
5. 자재구입비 : 관리인이 보수에 필요하여 구입한 자재비용 전액
6. 관리인 인건비 : 관리인 선임시 수리계원의 회의를 통한 인건비 결정금액
7. 기타 법률에 의한 점검비용

③ 수리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바로 수리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신청) ① 수리계는 제7조에 따라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신청할 수 있다.

1. 전기료, 유류대 : 영수증, 입금확인서 첨부한 경우 적용
2. 장비임차료 : 세금계산서 첨부한 경우 적용
3. 시설복구비 : 시설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한 경우 적용
4. 장비보수비 : 세금계산서 첨부한 경우 적용
5. 자재구입비 : 세금계산서 첨부한 경우 적용
6. 수리시설 관리인 인건비 : 회의록 사본 제출시만 인정

② 군수는 보조 신청이 접수된 후 15일 이내에 예산 범위에서 보조하되 예산의 범위 초과 시 위 항의 순서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의 장은 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를 작성하여 매 연도개시 1월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수리계는 연도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매 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2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3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제3호에 따라 수리계를 해산할 경우에는 당해 수리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2조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규칙 제63조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담당 지부
2. 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군수

③ 군수는 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리계를 지도·감독한다.

② 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 |
|--|---------|-----|----------|------|
|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 | | | | 처리기간 |
| | | | | 10일 |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주소(소재지) | | | |
| 계 의 명 칭 | | | | |
| 계 원 수 | 인 | | | |
| 계구역 면적 | ha | | | |
| 수 해 면 적 | ha | | | |
|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 | | | |
| 시 설 명 | 시 설 형 태 | 소재지 | 수해면적(ha)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p>「평창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평창군수 귀하</p> | | | | |
| <p>※ 첨부 서류(각 1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해지역 구역도(축척 1/1,200~1/25,000지도) | | | | |
| <p>※ 시설 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p> | | | | |

【개인정보수집 · 이용동의서】

평창군은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 항목 | 수집·이용목적 | 보유기간 |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임원 및 수리계 명부 | 수리계 조직구성, 운영 | 수리계 해산 후 3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평창군 수리계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을 이해했으며,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20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수 리 계 등 록 증

계 의 명 칭: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소재지):

구 역 면 적: ha

수 혜 면 적: ha

「평창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등록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수 리 계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시행년월일:

수 신:

발 신: 수리계장(인)

제 목: 수리계운영상황 보고

1. 수리계 현황

| 조직일자 | 계원수 (인) | 기반시설명 | 구역면적 (ha) | 수혜면적 (ha) | 수리계 대표자성명 |
|------|------------|-------|--------------|--------------|--------------|
| | | | | | |

2. 경비 부과 및 징수

| 부과면적 (㎡) | 부과계원수 (명) | 부 과 내 역 (현금 : 원) | 징수액 (원) | 징수율 (%) | 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원) |
|-------------|--------------|---------------------|------------|------------|-------------------|
| | | | | | |

※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 예산액 (원) | 결산액 (원) | 결산액증 개·보수액(원) | | | | 감가상각비(원) | | | |
|------------|------------|---------------|-----|-----|---|----------|------|------------|---------------|
| | | 보조 | 차입금 | 자부담 | 계 | 전년이월 | 당년적립 | 당 년 사용액 | 총 당 금 전액누계 |
| | | | | | | | | | |

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결과

| 시설명 | 정비부분 | 정비소요액(원) | | | 비 고 |
|-----|------|----------|----|---|-----|
| | | 현금 | 기타 | 계 | |
| | | | | | |

※ 시설점검은 다음 년도 2월 25일 현재임

관계법령

1) 「농어정비법」

- 제126조(수리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제11조에 따른 공사관리지역 밖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 또는 광역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2. 17., 2013. 3. 23.>
- ③ 수리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계원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④ 수리계는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체납한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경비 징수를 의뢰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보조할 수 있다.

2)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제63조(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법 제126조 제2항에 따른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조직 기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리계의 조직 기준

가.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나.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수리계의 경비부과 기준

가. 운영경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비·관리비 전액

나. 손괴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복구비: 필요한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耐用年數)로 나눈 금액

3. 수리계의 해산 기준

가. 수혜지역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나. 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때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수·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